<의안번호 제26호>

2006. 6

2005년도 거창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전문위원 안상룡

【 목 차 】

1. 검토경과 ····· 3
2. 제출근거 ····· 3
3.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 3
   가. 세입결산 ····· 3
   나. 세출결산 ····· 4
   다. 세입·세출 처리상황 ····· 4
   라. 일반회계 세입결산 ····· 4
   마. 일반회계 세출예산 ····· 5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7
   사. 계속비 결산 ····· 11
   아. 다음연도 이월사업 ····· 12
4. 예비비결산 ····· 13
5. 기금결산 ····· 14
6. 채권결산 ····· 15
7. 채무액 결산 ····· 16
8. 보조금 결산 ····· 16
9. 기타사항 의견 ····· 17

<의안번호 제26호>

2005년도 거창군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2건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6. 12.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6. 6. 13.
○ 상정일자 : 2006. 6. 16.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3. 세입·세출예산 결산총괄

가. 세입결산(결산서 p17)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 월	C/A	C/B
계	315,608	320,524	315,359	5,165	172	4,993	99.9	98.4
일반회계	279,561	282,751	279,366	3,385	149	3,236	99.9	98.8
특별회계	36,047	37,773	35,993	1,780	23	1,757	99.9	95.3

나. 세출결산(결산서 p19)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불용액 G=C-E-F	미수납액 G/C
계	227,380	88,227	315,608	264,947	220,263	73,671	21,674	6.9
일반회계	201,115	78,446	279,561	239,833	202,836	62,924	13,811	4.9
특별회계	26,265	9,781	36,047	25,114	17,427	10,757	7,863	21.8

다.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20p)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315,358	220,263	95,095	34,228	17,608	21,103	705	21,452
일반회계	279,365	202,836	76,530	31,520	12,014	18,880	705	13,410
특별회계	35,993	17,427	18,565	2,708	5,593	-	-	8,042

※ ( ) 내서는 자금 없는 이월액

라.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26p)

(단위:백만원)

구분 / 과목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282,751	279,366	3,385	149	3,237	98.8
지방세	13,392	12,482	910	149	761	93.2
보통세	11,795	11,398	397	10	387	96.6
목적세	832	792	40	-	40	95.2
과년도수입	765	292	473	139	334	38.2
세외수입	99,655	97,679	1,976	-	1,976	98.0
경상적 세외수입	6,060	6,053	9	-	7	99.9
임시적 세외수입	93,595	91,626	1,969	-	1,969	97.9
지방교부세	97,511	97,511	-	-	-	100
조정교부금	3,868	3,868	-	-	-	100
보조금 (국고보조금)	67,325 (40,919)	67,325 (40,919)	-	-	-	1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000	500	500			50

마.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서 p31)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79,561	239,833	202,835	62,914	13,812
총무위원회	일반	107,866	94,924	87,430	18,322	2,114
산업건설위원회	일반	161,892	142,654	113,150	44,592	4,150
의회운영위원회	일반	818	812	812		6
기타,지원	일반	8,985	1,443	1,443		7,542

▶ 총무위원회 소관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항번호)
소 계	107,866	94,924	87,430	18,322	2,114	
기획감사실	4,282	4,055	4,024	79	179	1210
종합민원실	230	204	204		26	1220
행정과	43,279	41,854	41,840	377	1,062	
행정관리	41,195	39,907	39,893	296	1,006	1230
자치지원운영	2,084	1,947	1,947	81	56	1250
재무과	4,988	4,564	2,561	2,393	34	1260
사회복지과	27,225	23,737	20,784	6,082	359	2310
문화관광과	21,184	15,138	12,834	8,161	189	
공보관리	3,603	3,448	3,447	141	15	1270
문화및체육	17,581	11,690	9,387	8,020	174	2110
보건소	5,776	4,528	4,503	1,024	249	2210
거창사건관리사업소	902	844	680	206	16	1240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 고 (항번호)
소 계	161,892	142,654	113,150	44,592	317	6620
경 제 과	8,419	7,634	6,690	1,412	317	6620
지역경제개발	5,478	4,833	3,913	1,388	177	3210
교통행정관리	2,941	2,801	2,777	24	140	3410
산림환경과	23,631	18,498	15,779	7,497	355	5540
환경개선관리	4,019	3,341	3,299	672	48	2230
산림자원개발	19,612	15,157	12,480	6,825	307	3310
건 설 과	48,142	47,092	38,285	8,381	1,476	3320
도시건축과	20,803	18,668	12,810	7,009	984	2410
재난안전관리과	8,686	3,813	1,092	7,515	79	
재난안전관리	8,302	3,467	746	7,515	41	3330
민방위관리	361	325	325	-	36	4110
소방관리비	23	21	21	-	2	4210
농업기술센터	42,703	37,936	30,439	11,332	932	
농수산개발	28,765	27,800	20,303	8,064	398	3110
농촌진흥	13,938	10,136	10,136	3,268	534	3120
상수도사업소	9,508	9,013	8,055	1,446	7	2220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의 이용 : 해당 없음

2) 예산의 전용 : 13건(결산서 p517)

(단위:천원)

구분 / 부서	사업명	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세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계	13건				2,578,507	322,392	322,392	
보건소	보건시설 운영	보건소 운영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1,520	11,520		국·도비 보조사업을 특정 과목을 일괄 계상분
				인건비			11,520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편성
		〃	〃	민간이전	557,593	157,256		
				일반운영비			157,256 (7건)	〃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 기능습득 위탁교육	장애인 복지	〃	사회단체 보조금	4,000	4,000		장애인단체의 전문지식 결여로 거창전문대 위탁 시행
				공기관 대행사업비			4,000	
행정과	군민의 날 행사	행정관리	경상적 경비	행사 지원비	32,540	8,000		군민의 날 행사 분담운영
				민간행사 보조위탁			8,000	
기획감사실	가남정보화 마을 조성	정보통신	보조사업	자산 취득비	120,000	11,000		가남정보화마을 센터 건물보수
				시설비			11,000	
〃	군민 PC 경진대회	〃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7,590	5,000		선거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용도 조정
				일반운영비			5,000	

산림환경과	공공재활용기반시설확충	환경정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213,000	30,000	30,000	폐기물처리시설 전기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
경제과	마케팅업무추진	미래신업지역경제	자체사업 경상적 경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35,000	8,676	8,676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행정과	공로연수 및 신규채용	자치행정	행정관리 〃	일반운영비 직무수행비	484,914	28,800	28,800	공로연수자 발생 정원증가 직급보조비 부족
〃	공무원교육	행정관리	자체사업 〃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20,000	10,000	10,000	공무원교육훈련 부담금
행정과	평생교육훈련	평생교육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24,200	11,000	11,000	평생학습 발전방향 등 연찬회 개최
의회사무과	의사운영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여비(국외) 〃 (국내)	15,600	3,240	3,240	의정활동 국내여비 부족
행정과	공무원복리후생지원	행정관리 〃	경상적 경비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484,914	1,500	1,500	공로연수자 발생으로 복리후생비 부족
〃	진해신항만명칭쟁취대회	행정관리 〃	경상적 경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484,914	32,400	32,400	진해신항만 명칭쟁취 행사참석

【검토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세항」, 「세세항」, 「목」 사이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사항에 해당됨.

○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목으로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단,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계연도의 경과 후나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해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2005년도 결산서에 나타난 예산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13건에 322,392천원이 되어 있으나 이중 보건사업운영과 관련된 7건 168,776천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출예산 과목을 목별 구분없이 특정과목에 일괄계상 편성 후 전용하는 사례로서 관계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지 않고 행한 행위로 예산의 기본질서를 위하여 향후 특단의 대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예산의 이체 : 159건, 16,856백만원

- 이체사유 : 2005. 7. 1. 기구개편으로 17개 담당 예산이체

※ 결산서 p160~167 참고

※ 조직개편 현황

구 분	현행		조직개편		비고
	실·과	담당	실·과	담당	
계					증 1과 6담당
본 청	2실 10과	51	2실 9과 1단	52	증 1 담 당
의 회	1 의 회	1	1	1	
직속기관	2직속(2과)	13	2직속(3과)	17	증 1과 4담당
사 업 소	4 사 업 소	8	4 사 업 소	9	증 1 담 당
읍 · 면	1읍 11면	53	1읍 11면	53	

○ 직제승인 내역 : 1과 5담당

- 공무원노조법 관련 : 공무원단체담당 신설
- 재난안전관리과 설치 관련 : 복구지원, 지역협력담당 신설
- 종합부동산세 시행 관련 : 조사평가담당 신설
-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련 : 복지기획 담당 신설

【검토의견】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기구개편된 부서별·담당별 올바르게 예산을 정리한 부분은 바람직한 사항임.

사. 계속비 결산

(단위:천원)

재 원	사 업 명	예 산 액	전 년 도 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16,911,394**	**15,888,636**	**32,800,030**	**13,415,966**	**19,379,651**	**4,413**
국고보조	복합문화단지 조성	1,000,000	250,000	1,250,000	2,387	1,247,613	
국도비보조	거창도서관 건립	2,800,000	2,282,714	5,082,714	3,920,128	1,162,586	
국고보조	거창스포츠 파크	4,550,000	4,831,947	9,381,947	3,636,856	5,740,678	4,413
국고보조	소각장시설 설치사업		630,000	630,000		630,000	
국도비보조	노인여성장애인 삶의쉼터 조성사업	4,861,394	2,011,957	6,873,351	1,626,070	5,247,281	
도비보조	읍민생활공원	2,000,000	3,916,390	5,916,390	2,904,822	3,011,568	
국고보조	거창읍청사 신축	1,700,000	1,965,628	3,665,628	1,325,703	2,339,925	

【검토의견】

○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의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연부액)을 정하여 한꺼번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임.

○ 또한 계속비는 의결 받은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기간 내에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 등 집행에 제약이 없음.

○ 그러나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비사업의 연속이 2009년까지 진행중임에도 집행잔액 4,413천원을 불용반납 처리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며

○ 여타 사업도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현장확인과 병행하여 확인할 부분이 있음.

아.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p187~204)

(단위: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명시이월	계	157	44,485	31,565	
	일반회계	156	44,440	31,520	
	특별회계	1	45	45	
사고이월	계	93	45,580	16,405	
	일반회계	89	35,662	12,014	
	특별회계	4	9,918	4,391	

【검토의견】

○ 명시이월사업이 일반회계 156건 31,520백만원, 특별회계 1건 45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89건 12,014백만원, 특별회계 4건 4,391백만원으로 총이월사업은 250건 47,94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기 미도래 또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은 협의 또는 보상지연 등 행정 내부적인 사정에 의거 이월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매년 많은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익년도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사업은 가급적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야 할 것임.

-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승인 시 명시이월 승인한 예산액은 32,718,293천원이나 결산서에는 1,153,008천원이 감소된 31,565,285천원으로 되어 있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월사업비 계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명시이월사업비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임차 일반운영비"(p151) 275,000천원과 문화관광과의 "박물관 문화학교 일반운영비" 5,100천원(p188)은 경상적 경비임에도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와 미집행예산을 삭감하여 다음연도의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예비비 결산(결산서 p181)

(단위:천원)

구 분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건**	**1,904,097**	**1,903,725**	**442,612**	**1,461,113**	**372**
재난관리	8.2-8.3수해응급복구장비대	60,368	60,368	60,368		
재난관리	8.2-8.3수해응급복구자재대	12,063	11,691	11,691		372
사회보장	이재민 구호	12	12	12		
관광진흥관리	구연교 수해복구사업	6,650	6,650	6,650		
체육청소년	갈계체육공원수해복구사업	4,627	4,627	4,627		
산림보호	사유림(임도) 복구사업	31,014	31,014	1,441	29,573	
산림관리	사유림(사방) 복구사업	112,655	112,655	4,288	108,367	
산림관리	사유림 복구(자치단체간 부담금)	46,716	46,716	46,716		
건설행정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624,376	624,376	78,992	545,384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 복구사업	153,890	153,890	53,463	100,427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 복구사업 (공기관대행)	5,571	5,571		5,571	
농업기반조성	농경지 복구사업(자본보조)	10,446	10,446	1,419	9,027	
도로관리	농어촌도로 복구사업	28,205	28,205		28,205	
복구지원	지방2급소하천복구사업	423,848	423,848	12,091	411,757	
복구지원	소하천 복구사업	227,089	227,089	16,474	210,615	
건축행정	수해피해주택 복구비	570	570		570	
농업소득관리	농작물 복구(농약대)	79	79	79		
농업소득관리	농작물 복구(대파대)	2,119	2,119	2,119		
축수산관리	가축입식비 지원	82	82	82		
시설관리	거창사건추모공원 복구사업	11,617	11,617		11,617	
서무관리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140,000	140,000	140,000		
상공관리	가조공설시장누수피해 보상금	2,100	2,100	2,100		

【검토의견】

○ 예비비 9,444,873천원 중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8. 2~8. 3) 18건과 국민건강보험 부족분 등 2개 사업에 총 1,904,09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42,612천원을 지출, 1,461,113천원을 이월하였음.

- 지출된 예비비사업은 총 20건 중 18건이 복구사업비이며, 이외 성과상여금 부족분 140천원, 가조공설시장 누수피해 보상금 2,100천원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용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함.

○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부족분" 140,000천원은 서무관리의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으며 또한 "가조공설시장 누수 피해 보상금" 2,100천원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 경우이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할 성질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불가피하게 지출한 배경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지극히 삼가야 될 것으로 사료됨.

5. 기금결산(결산서 p273~289)

(단위: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잔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잔액
		수 납 액	지 출 액	
합 계	2,307,254	683,804	350,101	2,640,957
거창 아림예술제 기금	310,004	71,460	11,464	370,000
거창군체육회진흥기금	23,337	3,475		26,812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291,041	71,971	19,700	343,312
거창군 노인복지 기금	795,892	132,355	100,272	827,975
거창군 여성발전 기금	265,882	131,709		397,591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	583,394	251,208	195,185	639,417
거창군 식품진흥 기금	37,704	21,626	23,480	35,850

※ 별도 검토의견 없음

6. 채권액 결산(결산서 p293)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잔액
합 계		2,234,758	1,002,373	1,320,639	1,916,492
일반회계		215,151	20,000	18,907	216,244
특별회계	소 계	2,019,607	982,373	1,301,732	1,700,248
	주택사업	156,765	56,516	107,069	106,212
	농업발전기금	70,375			70,375
	저소득주민	111,524	210,787	77,003	245,308
	농공단지	1,680,943	715,070	1,117,659	1,278,353

【검토의견】

○ 소관별 전년도 말 현재액이 일반회계는 전년도 결산서와 일치하나 특별회계는 383,457천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 별도의 설명이 필요.

※ 2005년 말 : 2,019,606천원

2004년 말 결산서 현재액 : 1,636,149천원

- 주택사업은 156,765천원으로 152,061천원보다 4,704천원 증가되었고
- 농업발전은 70,375천원으로 60,000천원보다 10,375천원 증가되었으며
- 저소득주민은 111,524천원으로 110,124천원보다 1,400천원 증가되었으며
- 농공단지는 1,680,943천원으로 1,313,963천원보다 366,980천원이 각각 증가됨.

7. 채무액 결산(결산서 p297~300)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잔액
합 계		**15,823,186**	**741,000**	**1,081,519**	**15,482,667**
일반회계		10,252,801	500,000	31,601	10,721,200
특별회계	소 계	5,570,385	241,000	1,049,918	4,761,467
	공기업		241,000		241,000
	상수도	3,818,800		211,100	3,607,700
	주택사업	151,585		38,818	112,767
	농공단지조성	1,600,000		800,000	800,000

※ 별도 검토의견 없음

8. 보조금 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		108,641,277	108,383,922	77,751,296	29,927,070	705,556
일반회계		98,469,051	98,464,639	71,661,418	26,097,665	705,556
특별회계	소 계	10,172,226	9,919,283	6,089,878	3,829,405	
	상수도	3,068,912	3,068,912	1,164,471	1,904,441	
	의료보호	103,731	103,731	103,731		
	수질개선	6,999,583	6,746,640	4,821,676	1,924,964	

※ 별도 검토의견 없음

9. 기타사항 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임.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것임.

○ 진정한 의미의 결산심사와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났는가의 평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선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6월 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며 제5조(심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안건을 심의·의결한다로 되어 있어 실제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계검사 기간이 '06. 5. 22~6. 10(10일간)임을 비추어 볼 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결산시기를 재조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 둘째, 집행부서에서 당초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당초에 계획했던 집행예산에 대하여 의원들이 해당 사업별 실적(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부서별 주요 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체적 평가를 선행하여 결산심사 승인 제출 시에 관련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인 결산심사 승인에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서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 셋째,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야별 주요시정 및 개선의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부서에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결산승인자료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이 타당한데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함.

○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군정업무 주요사업 17개 부서 211개 핵심과제에 대하여는 사업평가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미 집행부에서 지난 연말 자체적 평가를 군정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하여 공개되었으므로 생략함이 타당함.

○ 그러나 연구개발비가 있는 아래 부서에서는 「연구개발비」 예산을 집행한 결과, 당초 목표대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여부와 지방행정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의 사업평가 설명이 필요함.

소 관 부 서	예 산 액	연 구 개 발 내 용
행 정 과	30,000	○ 교육특구 기초조사 학술용역
	220,000	○ 전산개발비(제적부 전산화작업)
도 시 건 축 과	130,000	○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1억원) ○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요양병원 진입로)(3천만원)
경 제 과	550,000	○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화강석 품질 기준 설정용역 ○ 채석생산 신기술 개발, 가공 신기술 및 친환경기술개발 용역
기 획 감 사 실	160,000	○ 거창군 홈페이지 개편 및 플래시 페이지 제작
종 합 민 원 실	90,000	○ 지적측량 결과도 광파일 전산화 제작

○ 이밖에도 자체사업이 사고이월된 부서와 불용액이 예산편성 대비 20% 이상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로 계상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불필요한 사항까지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함이 바람직함.

※ 현황 : 붙임자료 참고

○ 끝으로 특정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20% 이상 반납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사업예산을 집행토록 할 필요 있음.